

의안번호	2124737
의 퇴 인	최혜영 의원
회 답 일	2023. 10. 6.
추계번호	23C4285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,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32억 5천만원(연평균 66억 5천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(안 제7조)	12,250	5,250	5,250	5,250	5,250	33,250	6,650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19301호 안 제18조의3(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법률 제19301호 안 제18조의3(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)	○	○ 보건복지부의 현행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서는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추가재정소요 총액을 제시
 -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지원 총액의 50%를 국비로, 나머지 50%를 지방비로 충당
 - 이와 달리, 안 제22조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·인력·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
 - 그러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재원의 분담 비율을 알 수 없음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료기관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할 경우, 장애친화 산부인과 필수 시설 및 장비 마련과 필수 인력 배치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(필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은 참고자료 [부표 1] 참조)
- 본 추계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례를 적용하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(참고자료 [부표 2] 참조)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·운영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¹⁾을 통해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·장비비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, 매년 운영비(인건비 및 사업비) 목적으로 1억 5천만원을 지원(국비보조율 50%)
 - 시설·장비비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이 이루어진 1차년도에만 지급하고, 운영비는 운영 개시 후 매년 지급(단, 1차년도의 경우 최장 1분기 지원)
 -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공모를 통해 10개 병원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, 1개 병원이 진료를 개시함
- (대상 기관 수) 2023년 9월 말 기준 전국의 지방의료기관 35개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설치된 기관은 없으므로, 35개 기관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 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과 인천광역시 의료원의 경우 분원이 있으나, 분원을 제외한 본원에만 동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- (지원 단가) 현행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의 시설·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, 보건복지부의 2024년 예산안에도 동일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므로, 추계기간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(지원 시점) 추계기간 첫 해에만 시설·설치비를 지급하고, 차년도부터 매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22억 5천만원,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2억 5천만씩 5년간 총 332억 5천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지방의료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, 개소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시설·장비비(A)	350	0	0	0	0	-	-
운영비(B)	0	150	150	150	150	-	-
대상 시설 수(C)	35	35	35	35	35	-	-
추가재정소요 $A \times (B + C)$	12,250	5,250	5,250	5,250	5,250	33,250	6,6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장애인건강보건의관리사업의 내역사업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현행사업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국가 지원 단가가 변경되거나 지방의료원의 수가 변동될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

참고자료

[부표 1] 장애인화 산부인과 필수 시설, 장비, 인력

구분	주요 시설	실수(개실)	내용
외래	외래진료실	1	- 환자 공간 내 전동휠체어 이동 및 회전 가능하도록 최소 1.4m×1.4m 공간 확보 필요
	처치실(내진실, 초음파실)	1	- 진찰대 양옆으로 의료진 및 환자 접근 가능하도록 ¹⁾ 진찰대 및 가구배치 필요 - 탈의 가능하도록 ²⁾ 공간확보 및 시선 차단용 커튼 또는 파티션 설치(또는 별도 탈의실 설치)
분만부	진통실	1	- 침대 및 분만대 양옆으로 의료진 및 환자 접근 가능하도록 ¹⁾ 장비 및 가구 배치 필요 - 가족분만실의 경우 진통실, 분만실, 회복실을 충족한 것으로 봄
	분만/수술실	1	
	회복실	1	
	보호자 대기	1	
병동부	입원실(1인실)	1	- 모자동실 권장(단, 모자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,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 필수)
	화장실	1	- 입원실 내 화장실 또는 입원실에서 근접한 공용화장실 중 장애인 사용 가능한 화장실 구비(휠체어 회전 가능, 출입구 단차제거 등)
신생아실	신생아실	1	-
	수유실	1	-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 권장(단, 모자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, 설치 필수)
공통	이동통로	-	- 장애인화 산부인과가 설치된 층 또는 구역 내의 이동통로는 관련 설비 및 가구설치 공간을 제외한 통로의 최소 유효폭을 1.2m 이상 확보
구 분	장비명	수량(개)	내용
편의기구	휠체어 체중계	2 (외래1, 병동1)	- 휠체어 타고 체중 측정 가능한 체중계 비치
	특수휠체어	1 (원내)	- 등받이 부착 자유로운 휠체어(상반신 엑스레이 사용 시 필요)
	이동식 전동리프트	1 (원내)	-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(체중계 기능 있을 경우 휠체어 체중계 별도구비 필요 없음)
	전동휠체어 충전기	1 (원내)	- 전동휠체어 이용 환자를 위한 충전 지원
	성인기저귀 교환대 ³⁾	1 (원내)	- 휠체어 장애인 환복 시 탈의실 또는 화장실 내 배치(접이식 교환대 가능)
산부인과 검사장비	진찰대	1 (외래)	- 진찰대 입구에서부터 휠체어를 탄 채 접근가능하며, 진찰대 높이는 휠체어 높이까지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할 것 - 하지마비 환자의 경우, 하지가 충분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- 진찰대 양옆으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
	초음파 침대	1 (외래)	- 침대 높이 43~48cm까지 낮출 수 있고 침대 옆에 손잡이/사이드레일 있어야 함
	슬라이딩보드	1 (외래)	- 침상주변 이동 도울 수 있도록 슬라이딩보드 구비

구 분	장비명	수량(개)	내용
방사선장비	흉부 X-ray	1 (원내)	- bed type, 상하 또는 좌우 이동이 가능한 건강검진장비(특수휠체어 있을 경우 별도구비 필요 없음)
입원실	전동침대	1 (병동)	- 여성장애인 병실(1인실) 내 3모터 전동침대 구비
직종		인원(명)	비고
전문의	산부인과	2	-
	소아청소년과	1	-
	마취통증의학과	1	-
간호사		6	산부인과 외래, 병동(분만실), 신생아실 합산 인원
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		3 ⁴⁾	(자격) 간호사(권장), 사회복지사 등 (지정) 3명 이상 지정하여 부문별(외래, 분만부, 병동) 24시간 공백없는 서비스 제공 필수(신규 채용 가능)
임상병리사		1	-
행정		1	-
방사선		1	-
원무		1	-
약무		1	-

주: 1) 접근 가능한 공간: (직진부) 최소 0.9m 이상, (꺾임부) 최소 1.2m 이상, (회전부) 최소 1.4m×1.4m 이상

2) 탈의 가능한 공간: 최소 1.8m×1.8m 이상 (단, 구조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 1.4m×1.4m 이상)

3) 불가피한 사유로 탈의실 또는 화장실 내 배치가 어려운 경우, 별도 장소를 마련하면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인정

4)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

자료: 보건복지부 「2022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안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[부표 2]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및 운영 현황

연번	소재지	종별	의료기관명	장애친화지원서비스
1	서울 종로구	상급종합병원	서울대학교병원	준비중
2	서울 양천구	상급종합병원	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	준비중
3	서울 영등포구	종합병원	성애병원	준비중
4	부산 부산진구	상급종합병원	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	준비중
5	광주 동구	상급종합병원	전남대학교병원	준비중
6	울산 동구	상급종합병원	울산대학교병원	준비중
7	경기 고양시	종합병원	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	준비중
8	충북 충주시	종합병원	건국대학교 충주병원	준비중
9	전북 전주시	종합병원	예수병원	개시
10	경북 구미시	종합병원	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	준비중

주: 2023년 3월 기준

자료: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